

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

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.

- 아 래 -

◆ 신청자(업체명) : 태양광발전소 (대표자 :)

◆ 투자지 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

◆ 대상 시설명 : 태양광발전소 / 99.375kW

◆ 융자신청 예정금액 : 170백만원

◆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

(단위: 백만원)

동 산	부동산	신용보증기금	기타 담보
	○		

*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,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25 년 월 일

지점
(TEI 금융업 새마을금고)

귀하



충 주 시

더 가까이 **충주**에서,
하나되는 **충북도민!**

수신 [] 외 4인 귀하 ([]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[]

(경유)

제목 개발행위허가 알림 [] 외 4인, [] 태양광]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충주시 민원- [] 호(2024.08.22.)로 접수된 충주시 [] 상의 발전시설(태양광)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

3.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은 면허세 및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한 후부터 발생되오니, 반드시 납부·제출한 후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허가민원과(개발행위팀) - 개발행위 허가내역(허가번호 [])

소 재 지		지 목	지적 (㎡)	사업면적(㎡)		사업기간	사업목적	신 청 인
읍면동	지번			부지	도로			
계	5필지		9,812	9,812		2025.03. 허가일 ~ 2025.12.30.	발전시설(태양광) 부지조성	[] []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[]
				9,433	379			
		답	2,294	2,215	79			
		답	1,379	1,354	25			
		전	1,167	1,087	80			
		전	2,129	2,064	65			
		답	2,843	2,713	130			

□ 허가조건

-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면허세 금27,000원을 납부하여야 함.
- 지역개발공채 금14,710,000원 매입하여야 함
- 위해방지·환경오염방지·조경 및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금 금38,000,000원을 세입세출외헌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함.
(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허가만료일로부터 2개월 가산한 기간으로 예치)
- 사업 착공 전 부지 내 배수시설이 기존 배수로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함.
-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은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야 함.
- 부지공사 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

PPA고객 신청(변경) 접수증명서

접수번호			발전계약번호		
발 전 사업자	고 객 명			발전소명	태양광발전소
	대인번호			전화번호	
	주 소	지번	충청북도 충주시		상업운전희망일
		도로명			2025-03-25

수전계약번호			접수내용	신설(발전기)
발전원	01 태양광		계약전력	100
공급방식	738 삼상4선(220/380V)		공급전압	380V
설치장소	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***			
설비용량	99.54		설비유형	3 일반선로(한전)
고객구분	03 발전사업자		적용약관(규정)	개별전력수급계약(PPA)
전력거래형태	한전거래			
사 용 전 점검기관	3 안전공사(자가용/전기사업용)		전기공사업체	
시설부담금	1 표준시설부담금			공중(O), 지중()
설비관리자명			연락전화	
SMS 수신번호				

※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

-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,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.
-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
 - 한전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
 -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,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
 -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
- ※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,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.
 -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
 -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
 -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% 를 초과하였으나,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 -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-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03월 18일

충북본부 충주시사장

(인)



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충북 충주 제2024-호

발전사업 허가증

- 성명(대표자) : (생년월일:)
- 상 호 : 태양광발전소
- 소재지 : 경북 포항시 남구
- 사업의 내용 : 태양광발전
사업장소 : 충북 충주시 동량면
- 사업규모
원동력의 종류 : 태양광 설비용량 : 99.375kW
공급전압 : 380V 주 파 수 : 60Hz
- 특정공급구역 : 해당없음
- 사업준비기간 : 2024년 8월 9일 ~ 2027년 8월 8일
- 허가조건 : 별도 불임
- 기타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,
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

『전기사업법』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
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

2024년 8월 9일

충 주 시

